

서울회생법원 제3부(나)
사건번호 2024회합100105회생

회생계획안의요지

2025년 5월 22일

채무자 주식회사 티몬

관리인 조인철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입안의 기초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 조정과 채무자 회사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한 조사기준일 현재 채무자 회사의 수정후 자산총계는 70,253,275 천원이고 부채총계는 1,019,100,368 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경제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산가치는 13,618,660 천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92,519,586 천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106,138,246 천원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어 채무자가 청산하는 것이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2024 년 10 월 10 일 EY 한영회계법인을 매각(M&A) 주간사로 선정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M&A 를 추진하였으며, 채무자 회사와 매각(M&A) 주간사는 2025 년 3 월 6 일 공고 전 인수예정자인 (주)오아시스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5 년 3 월 12 일 공개입찰을 위한 매각공고를 한 결과, 입찰 참여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2025 년 4 월 9 일에 인수제안서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위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가전 M&A 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위 투자계약에 따라 조달하는 총 인수대금 11,600,000,000 원(신주 발행, 주당 발행가액 10,000 원, 발행주식수 1,160,000 주) 중에서 본 M&A 주간사 용역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채무자 회사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형평성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회사 갱생의 공정성에 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과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안의 실행에 매진하여 기필코 채무자 회사를 갱생시킴으로써 회사와 종업원은 물론이고 국가경제 및 이해관계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M&A를 통한 채무변제자금 등의 조달과 배분

1. 인수대금의 구성

채무자 회사가 M&A 를 위하여 오아시스 주식회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변제자금 조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조 달 방 법	금 액
유 상 증 자	11,600,000,000
합 계	11,600,000,000

2. 인수대금의 배분

가. 배분기준의 근거

유상증자로 유입되는 인수대금으로 M&A 주간사 용역보수, 관리인 특별보수, 회생채권 조기변제 유보액 등을 차감한 잔여액을 기초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과 미확정채권 현실화예상액 변제에 배분하였습니다.

나. 채권자별 배분내역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3절 3. 변제할 채권의 내역” 참조

다. 회생채권 등 변제전 차감할 금액 : 주간사 용역보수, 관리인 특별보수, 회생채권 조기변제 유보액 등

3. 배분 금액 지급시기

인수대금이 납입되고 이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제 3 장 제 1 절이 규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안상 변제기일에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즉시 변제하겠습니다.

제3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1. 시인된 채권액

채무자 회사가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시인예정 채권 및 이의철회 채권 등을 가산하고, 변제 등 소멸된 채권 등을 차감한 변동사항을 반영한 채권의 전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첨 3]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채권내용	조사기간에 시인한 총 채권액	변동액(+/-)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	원금	170,673,475	-	170,673,475
		개시 전 이자	398,807	-	398,807
		개시 후 이자	-	-	-
		계	171,072,282	-	171,072,282
	구상채권(*1)	원금	-	-	-
		개시 전 이자	-	-	-
		개시 후 이자	-	-	-
		계	-	-	-
	미발생구상채권	원금	2,007,621,457	(-)2,007,621,457	-
		개시 전 이자	-	-	-
		개시 후 이자	-	-	-
		계	2,007,621,457	(-)2,007,621,457	-
	회생담보권 소계	원금	2,178,294,932	(-)2,007,621,457	170,673,475
		개시 전 이자	398,807	-	398,807
		개시 후 이자	-	-	-
		계	2,178,693,739	(-)2,007,621,457	171,072,282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원금	68,362,699,667	-	68,362,699,667
		개시 전 이자	175,463,354	14,695,759,258	14,871,222,612
		개시 후 이자	-	-	-
		계	68,538,163,021	14,695,759,258	83,233,922,279
	상거래채권(일반)	원금	245,719,825,202	25,789,834,169	271,509,659,371
		개시 전 이자	40,960,465	1,295,454,269	1,336,414,734
		개시 후 이자	1,190,397	-	1,190,397
		계	245,761,976,064	27,085,288,438	272,847,264,502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및소비자)	원금	542,221,456,012	202,312,026,271	744,533,482,283
		개시 전 이자	309,047,339	766,159,421	1,075,206,760
		개시 후 이자	-	-	-
		계	542,530,503,351	203,078,185,692	745,608,689,043
	구상채권	원금	403,452,236	62,621,135,231	63,024,587,467
		개시 전 이자	-	96,065,815	96,065,815
		개시 후 이자	-	-	-
		계	403,452,236	62,717,201,046	63,120,653,282
	미발생구상채권	원금	6,061,515,900	36,325,201,096	42,386,716,996
		개시 전 이자	-	-	-

구분		채권내용	조사기간에 시인한 총 채권액	변동액(+)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
		개시 후 이자	-	-	-
		계	6,061,515,900	36,325,201,096	42,386,716,996
	특수관계인채권	원금	1,929,899,334	15,409,063,097	17,338,962,431
		개시 전 이자	-	55,890,849	55,890,849
		개시 후 이자	-	-	-
		계	1,929,899,334	15,464,953,946	17,394,853,280
	회생채권 소계	원금	864,698,848,351	342,457,259,864	1,207,156,108,215
		개시 전 이자	525,471,158	16,909,329,612	17,434,800,770
		개시 후 이자	1,190,397	-	1,190,397
		계	865,225,509,906	359,366,589,476	1,224,592,099,382
	조세 등 채권	본세	971,097,930	(-)519,740	970,578,190
		가산금	45,892,930	(-)1,092,680	44,800,250
		증가산금	-	-	-
		합계	1,016,990,860	(-)1,612,420	1,015,378,440
합계		원금	867,848,241,213	340,449,118,667	1,208,297,359,880
		개시 전 이자	571,762,895	16,908,236,932	17,479,999,827
		개시 후 이자	1,190,397	-	1,190,397
		계	868,421,194,505	357,357,355,599	1,225,778,550,104

(*1) 회생담보권 구상채권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회생담보권(미발생구상채권) 1,007,621,457원이 권리변경되었으나, 이후 전액 소멸처리됨에 따라 본 도표 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2. 시인된 채권액의 주요 변동 내역

가. 회생담보권의 변동

(1) 소멸된 회생담보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한 회생담보권은 2 건에 2,007,621,457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별첨 3-4]와 같습니다.

(2) 미발생구상채권이 권리변경되어 확정된 회생담보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미발생채권에서 확정채권으로 전환된 회생담보권은 1 건에 1,007,621,457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별첨 3-8]과 같습니다.

나. 회생채권의 변동

(1)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회생채권은 184 건에 신고금액은 41,993,351,564 원이며, 그 중 시인된 금액은 14,561,973,184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3-2]와 같습니다.

(2) 소멸된 회생채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한 회생채권은 140 건에 3,036,962,354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별첨 3-5]와 같습니다.

(3) 이의철회된 회생채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은 46 건에 272,347,873,783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별첨 3-7]과 같습니다.

(4) 미발생구상채권이 권리변경되어 확정된 회생채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미발생채권에서 확정채권으로 전환된 회생채권은 1 건에 495,733,715 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별첨 3-9]과 같습니다.

(5) 명의변경된 회생채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7 건에 5,176,740,798 원이며, 그 내역은 [별첨 3-10]과 같습니다.

(6)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의해 확정된 회생채권

채권조사기간 이후 조사확정재판 결과에 의해 확정된 회생채권은 19 건에 2,685,144,985 원이며, 그 내역은 [별첨 3-11]과 같습니다.

(7) 기타 변동으로 확정된 회생채권

채권신고절차 상 미신고된 채권이나 본 회생계획안에 반영한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른 구매자채권자, ②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른 구매자채권자, ③ 서울보증보험(주) 전자상거래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대상자이나,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구매자채권자의 회생채권은 275,097 건에 72,808,559,878 원이며, 그 내역은 [별첨 3-12]와 같습니다.

다. 조세 등 채권의 변동

(1) 추완신고로 증가된 조세 등 채권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3 건에 신고금액은 47,830,200 원이며, 그 중 신고로 증가된 금액은 30,446,670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3-3]와 같습니다.

(2) 추완신고로 소멸된 조세 등 채권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2 건에 신고금액은 114,667,710 원이며, 그 중 신고로 소멸된 금액은 32,059,090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3-6]와 같습니다.

3. 변제할 채권액

변동사항 반영후 시인된 채권액에서 권리변경을 반영하여 향후 변제할 채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첨 4]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채권내용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	권리변경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출자전환	면제	개시 후 이자	
회생 담보권	상거래채권	원금	170,673,475	-	-	-	170,673,475
		개시 전 이자	398,807	-	-	-	398,807
		개시 후 이자	-	-	-	6,628,511	6,628,511
		계	171,072,282	-	-	6,628,511	177,700,793
	구상채권	원금	-	-	-	-	-
		개시 전 이자	-	-	-	-	-
		개시 후 이자	-	-	-	-	-
		계	-	-	-	-	-
	미발생구상채권	원금	-	-	-	-	-
		개시 전 이자	-	-	-	-	-
		개시 후 이자	-	-	-	-	-
		계	-	-	-	-	-
	회생담보권 소계	원금	170,673,475	-	-	-	170,673,475
		개시 전 이자	398,807	-	-	-	398,807
		개시 후 이자	-	-	-	6,628,511	6,628,511
		계	171,072,282	-	-	6,628,511	177,700,793
회생 채권	대여금채권	원금	68,362,699,667	(-)67,845,756,925	-	-	516,942,742
		개시 전 이자	14,871,222,612	(-)14,758,769,906	-	-	112,452,706
		개시 후 이자	-	-	-	-	-
		계	83,233,922,279	(-)82,604,526,830	-	-	629,395,449

구분		채권내용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	권리변경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출자전환	면제	개시 후 이자	
	상거래채권 (일반)	원금	271,509,659,371	(-)269,456,566,843	-	-	2,053,092,528
		개시 전 이자	1,336,414,734	(-)1,326,309,078	-	-	10,105,656
		개시 후 이자	1,190,397	-	(-)1,190,397	-	-
		계	272,847,264,502	(-)270,782,875,921	(-)1,190,397	-	2,063,198,184
	상거래채권 (중소상공인및소비자)	원금	744,533,482,283	(-)738,903,531,907	-	-	5,629,950,376
		개시 전 이자	1,075,206,760	(-)1,067,076,298	-	-	8,130,462
		개시 후 이자	-	-	-	-	-
		계	745,608,689,043	(-)739,970,608,205	-	-	5,638,080,838
	구상채권	원금	63,024,587,467	(-)62,548,010,280	-	-	476,577,187
		개시 전 이자	96,065,815	(-)95,339,388	-	-	726,427
		개시 후 이자	-	-	-	-	-
		계	63,120,653,282	(-)62,643,349,668	-	-	477,303,614
	미발생구상채권	원금	42,386,716,996	미정			미정
		개시 전 이자	-				
		개시 후 이자	-				
		계	42,386,716,996	미정			미정
	특수관계인채권	원금	17,338,962,431	(-)17,270,854,364	-	-	68,108,067
		개시 전 이자	55,890,849	(-)55,621,620	-	-	269,229
		개시 후 이자	-	-	-	-	-
		계	17,394,853,280	(-)17,326,475,984	-	-	68,377,296
	회생채권 소계	원금	1,207,156,108,215	(-)1,156,024,720,319	-	-	8,744,670,900
		개시 전 이자	17,434,800,770	(-)17,303,116,290	-	-	131,684,480
		개시 후 이자	1,190,397	-	(-)1,190,397	-	-
		계	1,224,592,099,382	(-)1,173,327,836,609	(-)1,190,397	-	8,876,355,380
	조세 등 채권	본세	970,578,190				970,578,190
		가산금	44,800,250				44,800,250
		증가산금	-				-
		합계	1,015,378,440				1,015,378,440
	합계	원금	1,208,297,359,880	(-)1,156,024,720,319	-	-	9,885,922,565
		개시 전 이자	17,479,999,827	(-)17,303,116,290	-	-	176,883,537
		개시 후 이자	1,190,397	-	(-)1,190,397	6,628,511	6,628,511
		계	1,225,778,550,104	(-)1,173,327,836,609	(-)1,190,397	6,628,511	10,069,434,613

제4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1.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변제재원

채무자 회사와 주식회사 오아시스 사이에 체결한 채무자 회사의 M&A 를 위한 투자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은 11,600,000,000 원이며 그 중 M&A 주간사 용역수수료, 관리인특별보수, 회생채권

조기변제 유보액을 제외한 변제재원 10,229,978,543 원으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미확정채권 현실화예상액에 배분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액
인수대금	유상증자(A)	11,600,000,000
차감항목	M&A 주간사 수수료 ^{주 1)}	259,200,000
	관리인 특별보수 ^{주 2)}	103,200,000
	계약이후 변제한 회생채권 ^{주 3)}	1,007,621,457
	소계(B)	1,370,021,457
회생채무 변제재원(C) = (A) - (B)		10,229,978,543
미확정채권 현실화 예상 유보액 ^{주 4)} (D)		160,506,286
1 원 미만 변제액 단수 발생으로 인한 유보액 ^{주 5)} (E)		37,644
수정 후 회생채무 변제재원(F) = (C) - (D) - (E)		10,069,434,613
확정채권 변제액	회생담보권 변제금액	177,700,793
	회생채권 변제금액	8,876,355,380
	조세 등 채권 변제금액	1,015,378,440
	소계(G)	10,069,434,613
M&A 변제액 배분후 잔액(H) = (F) - (G)		-

주 1) 매각자문 용역계약서(2024.10.15 서울회생법원 제 2024-10-019 호 허가) 제 7 조에 의거 산정하였습니다.

주 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 241 호(회생절차에서의 M&A)의 [별지 2]에 의거 산정하였습니다.

주 3) 조건부투자계약서 제 10 조 제 3 항에 의거 계약 이후 변제한 회생채권입니다.

주 4) 조건부투자계약서 제 11 조(미확정채무의 변제를 위한 사후관리 변제재원) 제 1 항에 의한 변제재원 유보액입니다.

주 5) 채권액 132 원 이하 채권자(1 원 미만 변제액) 유보액입니다.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회생담보권(상거래채권)

(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나) 개시 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86%의 이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2)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일반),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및소비자), 구상채권]

(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9.2438%는 출자전환하고 0.756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출자전환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나)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3)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가) 대위변제금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99.2438%는 출자전환하고 0.7562%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대위변제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출자전환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나)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4)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① 대여금채권(주위메프)

(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이자 100.00% 출자전환 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출자전환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나)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 ② 상거래채권(주)오렌지프렌즈, 큐텐테크놀로지(유), 큐익스프레스(주)

(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9.5183%는 출자전환하고 0.481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출자전환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나)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5) 조세 등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구법상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해당 부분)를 포함한 금액을 변제기일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추가 변제재원 및 변제방법, 추가 변제 시기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14 조, 제 115 조에 따라 신청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관리인이 제기하는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실현되는 우발이익 회수 금액과 Qoo10 Pte Ltd 의 청산절차에서 채무자가 배분 받을 청산배당액 등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로 평가되지 않은 우발이익 등의 실현 시 이들을 재원으로 하여 우발이익 실현을

위한 필요비용 차감 후 회생채권[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및소비자)]에 대해 추가변제하기로 하며, 추가 변제재원 확보 관련 진행 중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인의 청구,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

(단위 : 원)

구분	상대방	관할법원	사건번호	신청액
부인의 청구	농협은행(주)	서울회생법원	미정	2,000,000,000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	구 00, 류 00	서울회생법원	2025 회기 103	113,326,830,259

2) 청산배당 회수 우발이익

(단위 : 원)

상대방	관할법원	사건번호	채권액
Qoo10 Pte Ltd	The Singapore High Court	CW/ 258/ 2024	28,816,499,404

3) 1 차 PG 사 정산 유보금 합의 관련 우발이익

(단위 : 원)

상대방	관할법원	합의액	비고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	서울회생법원	미정	

가. 추가 변제 방법

이 회생계획 제 10 장 제 4 절에 의해 출자전환한 회생채권[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및소비자)]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추가 변제합니다.

나. 추가 변제 시기

각각의 우발 이익 실현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각각 변제합니다.

3.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채권 등 미확정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에 의하는 채권 이외에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 나.항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합니다.

4. 장래의 구상권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포함),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자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로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5. 주주의 권리변경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가. 기존주식 자본의 감소

이 회생계획인가 전에 발행한 기존주주가 보유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721,317주에 대하여는 이 회생계획 10장 제3절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발생일에 전량 무상 소각합니다.

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은 채권액 10,000원당 발행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발행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한편,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기존주식의 자본 감소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인가결정일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권(미발생구상채권 등)의 출자전환 대상액에 대한 출

자전환은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출자전환 후 주식 소각에 의한 자본의 감소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와 인수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이 회생계획에 규정된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는 이를 전부 무상 소각합니다.

출자전환 후 주식 소각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영업일에 발생합니다.

라. 1차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발행

채무자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합니다.

- 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 ② 1주의 액면금: 금 일만원(₩10,000)
- ③ 1주의 발행가: 금 일만원(₩10,000)
- ④ 발행할 주식수: 일백십육만(1,160,000)주
- ⑤ 신주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금 일백십육억원(₩11,600,000,000)
- ⑥ 유상증자금액: 일백십육억원(₩11,600,000,000)
- ⑦ 신주 배정방법 및 신주를 인수할 자: 신주 일백십육만(1,160,000)주를 아래 주식인수인에게 약정비율대로 배정합니다.

(단위 : 주, 원)

주식 인수인	인수주식수	금액	신주인수비율
(주)오아시스	1,160,000	11,600,000,000	100.00%
합계	1,160,000	11,600,000,000	100.00%

- ⑧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 이 회생계획 제10장 제4절에 의한 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 ⑨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장소: 채무자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본 계약에 따라 인수대금으로 납입된 금액 중 신주인수대금 상당액이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에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으로 전환됩니다.)
- ⑩ 신주의 효력발생일: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일

마. 2차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발행

채무자회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대상 회생채무를 변제한 이후,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신주를 추가 발행합니다.

- 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 ② 1주의 액면금: 금 일만원(₩10,000)
- ③ 1주의 발행가: 금 일만원(₩10,000)
- ④ 발행할 주식수: 사십만(400,000)주
- ⑤ 신주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금 사십억 원(₩4,000,000,000)
- ⑥ 신주 배정방법 및 신주를 인수할 자: 신주 사십만(400,000)주를 아래 주식인수인에게 약정비율대로 배정합니다.

(단위 : 주, 원)

주식 인수인	인수주식수	금액	신주인수비율
(주)오아시스	400,000	4,000,000,000	100.00%
합계	400,000	4,000,000,000	100.00%

- ⑦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할 때 정하는 날로서 이 회생계획 인가로부터 1개월 이내이어야 함
- ⑧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장소: 채무자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
- ⑨ 신주의 효력발생일: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일

제5절 결 언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와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025년 3월 6일 채무자 회사와 인수자인 주식회사 오아시스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에 대해 최대한 공정, 형평의 원칙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자 회사가 처해 있는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의 희생과 인수자인 주식회사 오아시스의 지원 없이는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사실과 금번 M&A의 추진이 회생채권 등을 최대한 변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깊이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하여 인수자인 주식회사 오아시스와 채무자 회사의 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써 일치단결하여 채권을 변제하고, 채무자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회생계획안의 제출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채권자 여러분과 서울회생법원 및 관계당국의 지도 편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